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규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2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김규남, 고광민, 곽향기,
김길영, 김용호, 김원태,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박춘선,
이성배, 이희원, 최민규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는 제대군인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미국과 달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며,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이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및 면제혜택을 받고 있음.
- 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물론 중기복무,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제대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무료 관람 대상에 제대군인을 추가함(안 제9조제1항제18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, 같은
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무료 관람)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	제9조(무료 관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7. (생 략)	1. ~ 1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8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</u>
<u>18. · 19. (생 략)</u>	<u>19. · 20. (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)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9조(무료관람)제1항제1호	△	해당 감면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비용추계가 곤란함(자체 추계 또한 곤란)
2	제9조(무료관람)제1항제18호		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안 제9조(무료관람)제1항제11호 및 제18호에 따라 세외수입이 감소¹⁾할 수 있으나 감면대상(Q)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추정하기에는 추계 객관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
 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서울시립미술관이 최근 개최한 특별전²⁾ 수입액을 준용하여 대강의 감소액을 추정하려 하였으나 감면대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, 특별전에 따라 수입이 상이하여 현재로서는 합리적 추계가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- 1) 제8조(관람료)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2. 기획전과 특별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

구분	종 류	관람료	관련 조례	비고
1	상설전	무료	현행 제8조(관람료)제1항제1호	
2	소장작품 기획전	무료		
3	기획전	현행 무료(심의결과)	현행 제8조(관람료)제1항제2호	
4	특별전	일정금액 관람료		

⇒ 현행 동 조례 제8조(관람료)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전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어 해당규정에 의해 관람료 수입 순감소가 예상됨

- 2) 2023. 4. 20. ~ 2023. 8. 20. 《에드워드 호퍼:길 위에서》 성인 관람료 17,000원(어린이·청소년 2인 20,000원) 등